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진단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란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아의 학습능력, 선행학습 정도 등을 확인·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필기시험, 구술시험, 면접, 실기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 또는 평가의 실시
2.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또는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의 실시
3. 외부 기관 또는 다른 학원 등이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 성적표, 등급표, 이수증, 수료증, 합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활용

②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유아가 학원 또는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놀이·활동 참여 과정에 대한 관찰, 대화 또는 상담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제2항에 따른 진단 행위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진단의 목적, 내용, 절차, 결과 제공 방식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서

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④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제2항에 따른 진단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점수, 등급, 순위, 합격·불합격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의5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행위

별표 5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2	100	200	300
--	----------------	-----	-----	-----

현행 라목을 마목으로, 현행 마목을 바목으로, 현행 바목을 사목으로, 현행 사목을 아목으로, 현행 아목을 자목으로, 현행 자목을 차목으로, 현행 차목을 카목으로, 현행 카목을 타목으로, 현행 타목으로 파목으로, 현행 파목을 하목으로, 현행 하목을 거목으로, 현행 거목으로 너목으로, 현행 너목을 더목으로, 현행 더목을 러목으로, 현행 러목을 머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진단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란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아의 학습 능력, 선행학습 정도 등을 확인·판정하는 것을 말한다.</u> <u>1. 필기시험, 구술시험, 면접, 실기 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 또는 평가의 실시</u> <u>2.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또는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의 실시</u> <u>3. 외부 기관 또는 다른 학원 등이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 성적표, 등급표, 이수증, 수료증, 합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활용</u> <u>②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유아가 학원 또는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u>

제17조의5(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생략) <신설>	<u>한 이후에 놀이·활동 참여 과정에 대한 관찰, 대화 또는 상담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u> ③ <u>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제2항에 따른 진단 행위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진단의 목적, 내용, 절차, 결과 제공 방식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u> ④ <u>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제2항에 따른 진단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점수, 등급, 순위, 합격·불합격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제17조의5(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u>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u>
---	--

2. ~ 6. (생 략) ② ~ ④ (생 략)	<u>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행위</u>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	개정안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 법조 문</th><th colspan="3">과태료 금액(만원)</th></tr><tr><th>1회 위반</th><th>2회 위반</th><th>3회 이상 위반</th></tr><tr><td>라. 법 제12조의 2를 위반하 여 유아를 대상으로 모 집 또는 수 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 는 시험 또 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신설></td><td>법 제 23 조 제 1항제 2호의 2</td><td>100</td><td>200</td><td>300</td></tr></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 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라. 법 제12조의 2를 위반하 여 유아를 대상으로 모 집 또는 수 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 는 시험 또 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신설>	법 제 23 조 제 1항제 2호의 2	100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 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라. 법 제12조의 2를 위반하 여 유아를 대상으로 모 집 또는 수 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 는 시험 또 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신설>	법 제 23 조 제 1항제 2호의 2	100	200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연 락 처	(044) 203 - 7031, 7034